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0. 2.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4명(4·5급 1명, 6급 1명, 7급 2명)과 정부혁신·조직관리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중전에 운영지원과에서 수행하던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업무를 경영기획실로 이관하고, 우체국펀드 판매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업무를 예금사업단에 신설하면서 준법감시담당관의 관련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호, 2020. . .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우정사업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부서 간 분장 사무를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국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조정 및 결산

18. 국유재산 임대·사용수익허가업무의 처리 기준 및 절차 마련

제3조제5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11호 중 “운영·총괄(우정고객만족센터의 운영을 포함한다)”을 “운영·총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제7조제5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제우편물 운송계획 수립 및 운송계약 체결

제7조제6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항제7호를 삭제한다.

9. 우편사업용 차량 보급 및 운영

10. 우정사업용 차량의 정수관리

제8조제6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에 관한 업무

제10조제3항제12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0호를 제21

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우정공무원교육원 홍보

제10조제4항제12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8호를 제2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우정사업 고객만족 관련 교육 운영지원

19. 교육인프라를 활용한 우표문화 과정 운영

제10조제6항제20호, 제21호 및 제2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예산의 편성 및 배정 등 예산총괄

25. 그 밖의 교육 및 행정지원

제11조제4항제2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에 관한 업무

제11조제6항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7. 우정사업본부 등의 전산 통계 관리 및 제공

별표 2 중 총계 “33,275”를 “33,280”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3,266”을 “33,271”로 하며, 일반직 계 “33,266”을 “33,271”로 하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4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식품위생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8”을 신설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을 삭제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611”을 “612”로,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식품위생주사 또는 간호주사 “3,008”을 “3,009”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식품위생주사보 “2,134”를 “2,136”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33,186”을 “33,191”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3,177”을 “33,182”로 하며, 일반직 계 “33,177”을 “33,182”로 하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4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8”을 신설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을 삭제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655”를 “656”으로,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식품위생주사 또는 간호주사 “3,247”을 “3,248”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식품위생주사보 “2,134”를 “2,136”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경영기획실장) ① ~ ③ (생략)	제3조(경영기획실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재정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영기획실장을 보좌한다.	④ ----- ----- ---
1. ~ 16. (생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설>	17. 국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조정 및 결산
<신설>	18. 국유재산 임대·사용수익허가업무의 처리 기준 및 절차 마련
⑤ 경영혁신기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영기획실장을 보좌한다.	⑤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국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조정 및 결산	<삭제>
9. 국유재산 임대·사용수익허가업무의 처리 기준 및 절차 마련	<삭제>
10. (생략)	10. (현행과 같음)
⑥ 홍보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영기획실장을 보좌한다.	⑥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우정사업 민원업무 운영·총괄(우정고객만족센터의 운영을 포함한다)	11. ----- 운영·총괄
⑦ 노사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영기획실장을 보좌한다.	⑦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제7조(우편사업단) ① ~ ④ (생략)	제7조(우편사업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물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설>	11. 국제우편물 운송계획 수립 및 운송계약 체결
⑥ 우편집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신설>	9. 우편사업용 차량 보급 및 운영
<신설>	10. 우정사업용 차량의 정수관리
⑦ 물류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우편사업용 차량 보급 및 운영

8. 우정사업용 차량의 정수관리

9. (생략)

⑧·⑨ (생략)

⑩ 국제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7. 국제우편물 운송계획 수립 및 운송계약 체결

8. ~ 15. (생략)

제8조(예금사업단) ① ~ ⑤ (생략)

⑥ 예금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2. (생략)

<신설>

⑦·⑧ (생략)

제10조(우정공무원교육원) ①·② (생략)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12. 예산의 편성 및 배정 등 예

<삭제>

<삭제>

9. (현행과 같음)

⑧·⑨ (현행과 같음)

⑩ -----
-----.

1. ~ 6. (현행과 같음)

<삭제>

8. ~ 15. (현행과 같음)

제8조(예금사업단)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22. (현행과 같음)

23.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매매업·투자중개업에 관한 업무

⑦·⑧ (현행과 같음)

제10조(우정공무원교육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1. (현행과 같음)

<삭제>

산총괄

13. ~ 15. (생략)

16. 우정사업 고객만족 관련 교육 지원

17. ~ 19. (생략)

<신설>

20. (생략)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12. 과정전담제의 총괄·운영

13. 삭제

14. (생략)

15. 사이버교육 과정의 개발 및 운영

16·17. (생략)

<신설>

<신설>

18. (생략)

⑤ 삭제

⑥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9. (생략)

20. 무한상상실 운영

13. ~ 15. (현행과 같음)

<삭제>

17. ~ 19. (현행과 같음)

20. 우정공무원교육원 홍보

21. (현행 제20호와 같음)

④ -----
-----.

1. ~ 11. (현행과 같음)

<삭제>

14. (현행과 같음)

<삭제>

16·17. (현행과 같음)

18. 우정사업 고객만족 관련 교육 운영지원

19. 교육인프라를 활용한 우표 문화 과정 운영

20. (현행 제18호와 같음)

⑥ -----
-----.

1. ~ 19. (현행과 같음)

<삭제>

21. <u>우정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홍보</u>	<u><삭 제></u>
22. (생 략)	22. (현행과 같음)
23. <u>교육인프라를 활용한 우표 문화의 확산 지원</u>	<u><삭 제></u>
<u><신 설></u>	24. <u>예산의 편성 및 배정 등 예 산총괄</u>
<u><신 설></u>	25. <u>그 밖의 교육 및 행정지원</u>
제11조(우정사업정보센터) ① ~ ③ (생 략)	제11조(우정사업정보센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보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20. <u>우정사업본부 등의 전산 통 계 관리 및 제공</u>	<u><삭 제></u>
21. • 22. (생 략)	21. • 2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예금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9. <u>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에 관 한 업무</u>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에 관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 유지 • 보수 및 운용 관리	10. ----- 제9호----- ----- -----
⑦ 보험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⑦ -----

분장한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7. <u>우정사업본부 등의 전산 통 계 관리 및 제공</u>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업무에 관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8. ----- 제7호-----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33,275	33,280	+5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은 제외한다)	33,266	33,271	+5
일반직 계	33,266	33,271	+5
.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공업사무관 ·시설사무관·전산사 무관·방송통신사무관 ·식품위생사무관·간 호사무관 또는 보건사 무관	<신 설>	8	+8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공업사무관 ·시설사무관·전산사 무관·방송통신사무관	7	<삭 제>	-7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시설사무관·전산사 무관·방송통신사무관 ·식품위생사무관·간 호사무관 또는 보건사 무관	611	612	+1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 주사·전산주사·방송 통신주사·식품위생 주사 또는 간호주사	3,008	3,009	+1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시설주사보·전산주 사보·방송통신주사보 ·식품위생주사보	2,134	2,136	+2
.	.	.	
.	.	.	

[별표 3]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33,186	33,191	+5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은 제외한다)	33,177	33,182	+5
일반직 계	33,177	33,182	+5
.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공업사무관 ·시설사무관·전산사 무관·방송통신사무관 ·식품위생사무관·간 호사무관 또는 보건사 무관	<신 설>	8	+8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공업사무관 ·시설사무관·전산사 무관·방송통신사무관	7	<삭 제>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시설사무관·전산사 무관·방송통신사무관 ·식품위생사무관·간 호사무관 또는 보건사 무관	655	656	+1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 주사·전산주사·방송 통신주사·식품위생 주사 또는 간호주사	3,247	3,248	+1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시설주사보·전산주 사보·방송통신주사보 ·식품위생주사보	2,134	2,136	+2
.	.	.	
.	.	.	